

고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

(의안번호 제709호)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	2001. 8. 20	고 성 군 수
나. 회 부 일 자 :	2001. 8. 21	
다. 상 정 일 자 :	2001. 10. 24	총무위원회 상정
라. 의 결 일 자 :	2001. 10. 24	총무위원회 의결

2. 제정사유

-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주민자치위원회 구성·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자치센터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려는 것임.

3. 주요골자

□ 주민자치센터

- 가.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은 당해 읍면장 및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군수가 정함.(안 제3조)
- 나.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읍면장의 요구에 의해 군수가 정하고, 재정형편 등으로 일시에 설치가 곤란한 경우 연차별 계획수립(안 제6조)
- 다. 자치센터는 읍면장 책임 하에 운영, 민간위탁 및 사용료 징수근거(안 제7조, 제10조)
- 라. 주민의 이용과 선량한 이용자로서 의무규정(안 제11조)
- 마. 강사 및 자원봉사자에 실비보상 근거(안 제13조)
- 바. 연간 운영계획 및 운영결과를 군수에게 보고(안 제14조)

□ 주민자치위원회

- 가.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관한 심의기구(안 제15조, 제16조)
- 나. 주민자치위원은 읍면장이 위촉하고, 주민의 자치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주민 중에서 선출(안 제17조)
- 다.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, 필요시 실비보상 근거(안 제23조)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본 조례안은 고성군의회 제89회 임시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었으나 심사결과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금번 회기에 심사하기로 하고 심사 보류한 안건임.
- 본 안건을 군민의 정서와 현실에 부합되게 처리하기 위하여 지난 10월 17일부터 10월 20일까지 4일간 선진 주민자치센터인 경기도 양주군 외 5개 지역을 집행부와 우리 의회에서 합동으로 견학한 결과 도시지역은 어느 정도 원활히 운영되고 있으나 농촌지역은 인구의 고령화와 지역적 여건상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다소 미흡하였음.
- 본 제도를 시·군별로 1개소 내지 2개소 정도 시범 실시한 결과 그 장·단점을 보완한 후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점진적·단계적으로 설치·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경남도내에서는 시범지역인 진해시와 산청군에서만 주민자치센터설치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나머지 시·군에서는 동 조례를 심의중이거나 심사 보류되어 있는 추세임.
- 그럼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충분한 설명과 선진 주민자치센터를 견학한 의원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후 심도 있는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였음.

5. 질의 및 답변

- 문 :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방법과 운영계획, 집행부와 의 갈등 해소방안은
- 답 : 금번 선진 주민자치센터 견학 결과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은 되어 있으나 운영에 애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. 각계 각층의 전문가를 위촉하여 자율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며, 행정과의 갈등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.
- 문 :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원봉사자 모집계획은
- 답 : 해당 프로그램에 적합한 자원봉사자를 초빙 또는 위촉하여 운용할 계획이며, 수당은 행정자치부지침(현재 1개소당 연간 운영비 1,500만원)에 의거 지원하고, 자원봉사자 모집인원과 수당지급 관계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율 결정하여 효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할 계획임.

6. 토 론 : 없음

7. 심사결과 : 2001. 10. 24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